



「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 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[신청인] ○○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(관인)

**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**

※ 지원 내용의 '물류비'는 지원대상 (투자사업자)이 직접 지불하여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

첨부서류	증빙서류 일체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장등록증명서</li> <li>2. 공장(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)승인(변경승인)서</li> <li>3.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</li> <li>4. 수입신고필증</li> <li>5. 해외사업장 보유장비 증빙</li> <li>6. 이전설비에 대한 선적서류(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B/L)</li> <li>7. 물류비 제반 증빙(인보이스, 전자세금계산서, 계약서)</li> <li>8. 해체·설치비 제반 증빙(전자세금계산서, 계약서)</li> <li>9. 사업자등록증명</li> </ol>	수수료 없음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, 공장(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)승인(변경승인)서,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, 건축물대장, 착공신고필증, 토지(임야)대장, 사업자등록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(법인·개인),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